

주식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가이드

1. 주식 양도소득	1
2. 지방소득세 납부하기	17
3. 신고 첨부서류 제출하기	19

신고 전 유의사항

- ✓ 국내와 국외 주식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내와 국외자산을 각각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.

(신고구분) 국내 자산 → 예정신고, 국외 자산 → 확정신고

⇒ 따라서, 지방소득세도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.

- ✓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신고 (양도)한 경우로서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

- ✓ 주식 양도소득 세율은 중소기업·대주주·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기타주식 해당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되므로 신고 세율 적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✓ 홈택스 신고를 위해서는 ①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공인 인증서와 ②엑셀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엑셀프로그램이 없는 경우에는 엑셀뷰어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.

- ✓ 상장주식 대주주의 주식 거래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권사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거래금액 등을 제공할 예정 ('19년 양도분부터)이오니 걱정 여부는 거래한 증권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I. 주식 양도소득

1. 증권사 HTS → 2. 국세청 홈택스 → 3. 로그인 → 4. 신고/납부 → 5. 양도소득세 → 6. 예정신고 작성 → 7,8 기본정보(양도인/양수인) → 9. 주식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→ 10. 세액계산 및 확인 → 11. 신고서 제출 → 12. 세금 납부하기

1. 증권사 HTS 배너(또는 홈페이지 배너)

- 배너에서 ‘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’를 선택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로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.

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

- [상장] 대주주 및 소액주주(장외거래), [비상장] 모든 주주 -

2019년 2월은 2018년 하반기(7월~12월)에 거래한 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달입니다.

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 쉽고 편리하게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< 세율 적용시 대주주 요건('18.7.1.~'18.12.31. 양도분) >

시장구분	코스피시장	코스닥시장	코넥스시장	비상장*
지분율 또는 시가총액	1%이상 또는 15억원 이상	2%이상 또는 15억원 이상	4%이상 또는 10억원 이상	4%이상 또는 15억원 이상

* K-OTC(협회 장외시장)을 통한 벤처기업 주식(4% 이상 또는 40억원 이상)

※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상기 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주주에 해당합니다. 단, 직전사업연도말 지분율이 미달 하였으나, 당해사업연도 중 지분율을 충족하는 경우 그 취득일 이후부터 대주주에 해당합니다.

상담문의 국번없이 126번 전자신고 가이드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

2.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(www.hometax.go.kr)



3. 로그인(회원 또는 비회원)



- 로그인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로 발급 받은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㉠회원 또는 ㉡비회원 로그인도 가능합니다.
- 공인인증서는 범용이나 용도가 제한된 은행, 증권, 보험용도 가능하며 홈택스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도 가능

회원 로그인

공인인증서 로그인

공인인증서 등록

공인인증서 로그인

공인인증서 안내

아이디 로그인

아이디

로그인

비밀번호

☐ 아이디 저장

회원가입

아이디/비밀번호 찾기

비회원 로그인

성명

주민등록번호

비회원 로그인

※ 개인은 회원가입없이 본인인증만으로 간편하게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, 본인인증을 위하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.

※ 비회원 로그인으로 이용가능한 메뉴

종합소득세, 양도소득세, 증여세 신고/납부, 근로장려금·자녀장려금 신청/조회, 연말정산 소득공제자료조회, 편리한 연말정산, 민원증명 일부 메뉴, 모의계산(양도세, 증여세), 사업장현황신고서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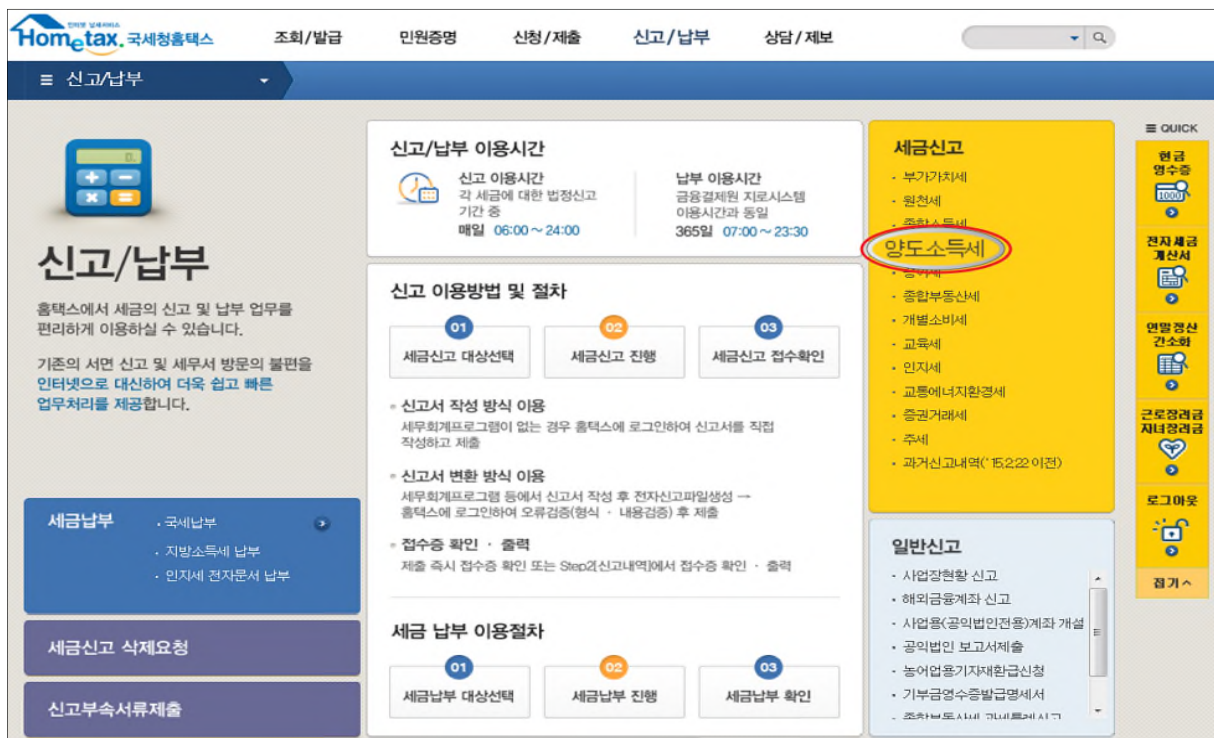
◇홈택스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합니다.

제88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① 세무공무원등은 법 제91조에 따른 국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8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4. 신고/납부 선택



5. 양도소득세 선택



6. 예정신고 작성

Step 1. 세금신고

Step 2. 신고내역

Step 3. 삭제내역

- 작성과 변환 신고 중에서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서를 작성 또는 변환 후 제출합니다. (신고이용시간 : 06:00 ~ 24:00)
- 신고서는 정상 접수된 것에 한하여 신고된 것으로 보므로 마감일에는 24:00 이전에 접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.
- 정기신고인 경우 해당 신고기한 내에 여러 번 신고를 하더라도 최종 신고한 내용만 정당하게 신고된 것으로 봅니다.
- 신고 후 접수결과(정상)를 꼭 확인하고, [Step 2. 신고내역]에서 접수증, 납부서, 첨부서류내역, 신고서원장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모의계산(양도소득세 자동계산)을 이용하시면 가장 일반적인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내역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.

양도소득세 신고

토지·건물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양도 차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

전자신고
이용방법
(동영상, 매뉴얼)

신고도움
서비스

양도소득세
종합안내

전자신고
가이드북

비사업용토지
신고안내

간편신고
한 개의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

예정신고
작성

기한후신고
작성

일반신고
모든 신고 이용 가능

예정신고
작성

확정신고
작성

기한후신고
작성

수정신고
작성

파일변환 신고하기
(회계 프로그램)

증빙서류제출
신고서 제출 후 관련 증빙서류 제출

증빙서류 제출

※ 새로운 홈택스 시스템에서는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후, 납세자가 서류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, 계약서 등 신고 관련 증빙서류를 PDF파일 형태로 온라인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※ 확정신고는 5월에만 가능합니다.

6-1. 팝업창 닫기

안정적 홈택스 서비스 이용을 위한 권장 사항

설정방법: IE > 도구 > 인터넷옵션 > 검색기록

인터넷 옵션

검색기록

검색기록을 삭제합니다.

삭제

팝업창 닫기

팝업창을 열려있는 상태로 유지합니다.

닫기

양도소득세 신고 안내

양도소득세 홈택스 신고하기 전 확인해 보세요!

- 1) 지방소득세 신고권의 금액은 각 신고 항목별로 국세의 10% 금액이 자동 입력되도록 되어있습니다. 다만, '지방세법' 등에서 정한 세율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자동 입력된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시스템에 자동 입력된 금액을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.
※ 지방소득세를 실제 신고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위택스(https://www.wetax.go.kr/main/)→지방소득세신고→양도소득세 화면에서 양도일자, 신고구분 등을 입력하여 확인 가능합니다.
- 2) 신고한 세액이 '지방세법' 등에 따라 산출한 세액과 다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'지방세법' 등에 따른 확인을 통해 납세액을 정산하여 고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※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·군·구청 세무과(세정과) 또는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※ 과소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로 인하여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신고한 가산세액이 지방세법 등에 따라 산출한 세액과 다를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산세액을 추가 추징할 수 있습니다.
- 3) 주식을 거래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. (원천징수된 경우는 제외)

1

확인하였습니다

2

취부중인 열지 않음

3

닫기